

2009년 07월 27일 제 정  
2012년 10월 05일 1차개정  
2015년 01월 08일 2차개정  
2017년 01월 25일 3차개정  
2018년 11월 15일 4차개정  
2019년 10월 23일 5차개정  
2021년 03월 11일 6차개정  
2021년 06월 28일 7차개정

# 이사회 규정

2021. 06. 28.



# 이사회 규정

## 제1장 총칙

### 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에스케이디앤디주식회사 정관 제47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 
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  
에 의한다.

### 제 3 조 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  
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.

## 제2장 구성

제 4 조 (구성)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### 제 5 조 (의장)

- ① 이사회 의장에 관하여는 정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다.
- ②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또는 대표이사 전원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  
우에는 이사회에서 의장을 정하도록 한다.

## 제3장 회의

### 제 6 조 (종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
-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개최하기로 하되, 이사회 소집권자가 사전 통지를 통하여 해당 월의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#### 제 7 조 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# 제 8 조 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일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- ③ 이사회회의 일시 및 장소를 결정함에 있어서 최대한 이사들의 참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.

#### 제 9 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 397조의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이사회회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나,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## 제 10 조 (부의사항)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 단, 법령 또는 정관이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거나 주주총회의 위임을 받아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,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

에 부의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
1. 회사 일반에 관한 사항

- (1) 주주총회의 소집
- (2)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
- (3) 영업보고서의 승인
- (4) 재무제표의 승인(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.)
- (5) 정관의 변경
- (6) 자본의 감소
- (7) 회사의 해산, 청산, 파산, 회생절차 또는 워크아웃 등의 신청, 착수, 회사의 계속
- (8)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, 회사의 합병, 분할 또는 분할합병
- (9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- (10) 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(11) 주식의 액면미달발행
- (12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
- (13) 배당에 관한 사항
- (14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방법 결정
- (15) 이사의 보수
- (16) 법정준비금의 감액
- (17)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, 종류의 변경 기타 주식의 권리 변경
- (18)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이전
- (19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2. 경영에 관한 사항

- (1) 회사경영의 중요한 사항의 결정
- (2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(3) 이사 해임안의 제출
- (4) 공동대표의 결정
- (5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- (6)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. 단, 감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
- (7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. 단,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
- (8) 이사에 대한 전문가 조력의 결정

- (9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(10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- (11)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- (12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- (13)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 8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5%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다음의 행위
  - 가)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, 유가증권,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
  - 나) 동일인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20%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 제342조의 2(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)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
- (14) 신규 사업 진출
- (15) 자회사의 설립, 인수, 출자 또는 매각. 단, 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는 제외함

### 3. 채무에 관한 사항

- (1)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유형자산(임대목적부동산 포함)의 취득 또는 처분  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(그 법인이 운용 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)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(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다)를 통한 취득·처분을 포함한다]
- (2) 자기자본(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을 의미하며, 이하 같음)의 100분의 5 이상의 다른 법인의 주식 및 출자증권과 주권관련 사채권의 취득 또는 처분
- (3)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의 증여를 하거나 받기로 하는 경우
- (4)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단, 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을 제외한다.
- (5)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거나 채무를 면제 받기로 하는 경우
- (6) 결손의 처분
- (7) 신주의 발행

- (8)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
- (9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(10) 전환사채의 발행
- (11)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(12) (10)목, (11)목 이외에 기타 주식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증권의 발행
- (13) 주식, 사채 또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권리의 부여, 조건의 변경 또는 수정
- (14)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
- (15)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, 질권의 설정
- (16)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
- (17) 자기주식의 소각
- (18)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상의 단기차입금 증가.  
(단기차입금에는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만기 1년 이내의 사채금액이 포함되며, 기존의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은 제외)
- (19)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타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, 금전의 가지급, 금전 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.  
단, 종업원 및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의 경우에는 제외
- (20) 자본의 증감 기타 일체의 자본구조의 개편
- (21) 본호 각목에서 정한 이사회 부의기준이 법령에서 정한 이사회 부의기준에 미달 또는 불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회사의 재무 활동 사항

#### 4. 이사 등에 관한 사항

- (1)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
- (2)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
- (3) 타회사의 임원 겸임(단,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는 경우에 한함)
- (4) 이사회 규정, 회의체규정 기타 회사의 주요 규정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

#### 5. 기 타

- (1) 중요한 소송의 제기
- (2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- (3) 외부감사인의 선임 또는 변경
- (4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#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#### 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
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

3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③ 권한의 위임

제10조 제1항 제1호 15목에 의한 이사의 보수를 포함한 임원의 보수(단, 사내이사의 보수는 제외)는 임원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며, 대표이사가 결정한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것으로 의제한다.

**제 11 조 (이사회 내 위원회)**

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
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**제 12 조 (삭제)**

**제 13 조 (관계인의 출석)**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**제 14 조 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**

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**제 15 조 (의사록)**

-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#### 제 16 조 (간사)

-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업무분장규정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하는 단위조직의 조직장이 되며,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.

부 칙 (2009.07.01)

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2.10.05)

이 규정은 2012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5.01.08)

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2015년 01월 0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7.01.25)

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2017년 0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8.11.15.)

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2018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

부 칙 (2019.10.23.)

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201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1.03.11.)

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2021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7조, 제8조, 제10조 제1항 본문, 동조 제1항 제1호 10목과 15목 및 제2호 6목 및 7목, 제10조 제2항 및 제3항, 제11조 3항, 제12조, 제15조 제2항은 제1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정관변경 안건 및 감사위원 선임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시행한다.